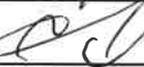


# ( 관리감독자 ) 교육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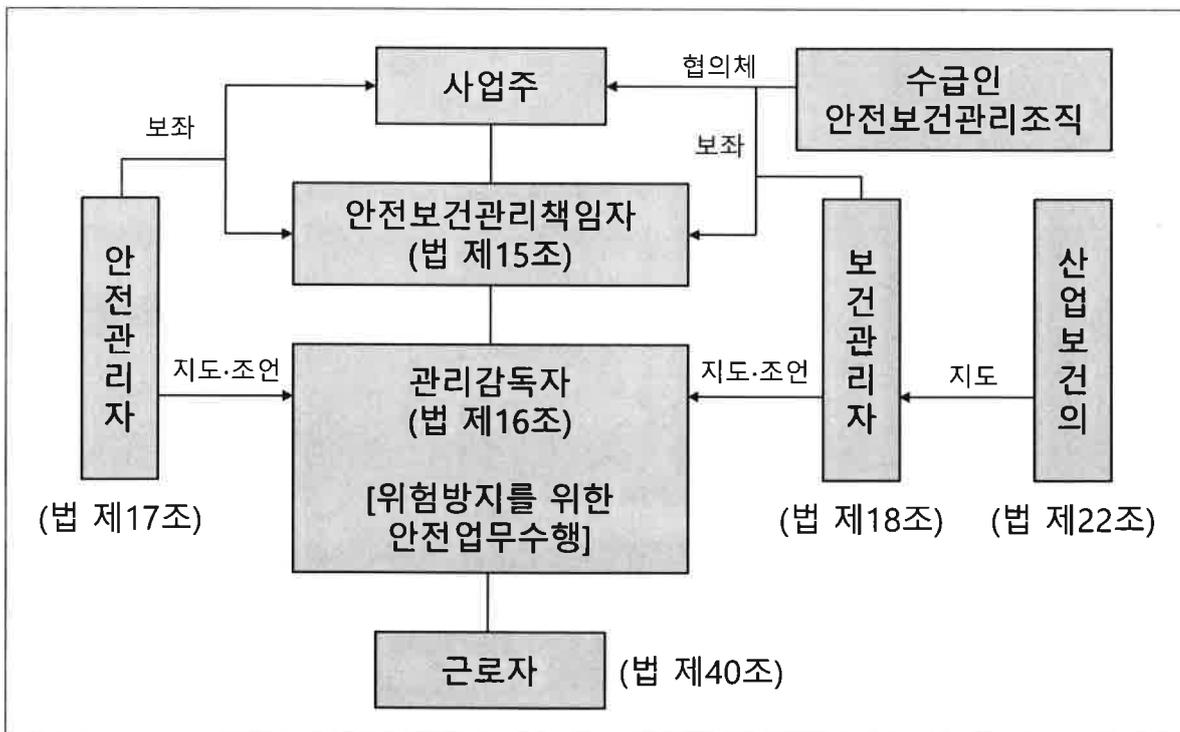
현장명 : KT&G광주공장 자동창고증축(물류시스템공급)

일자 : 2023년 12월 22일

NO	업체명	성명	서명	NO	업체명	성명	서명
1	미릉	김원서		26			
2	"	김준우		27			
3	스타	김기현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7:20:27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5

## 관리감독자의 업무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업무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업무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업무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업무6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업무7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8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업무9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업무10 기타의 관리감독자 업무

17:20:27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6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물림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20:27

##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7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에 있어서의 점검 및 조치(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별표 2의 19종의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직무수행 내용에 따라 점검하고 조치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9절 제2관제3관)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7:20:28

##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8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1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7:20:28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9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2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7:20:28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0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5관)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7:20:28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1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2.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제2편제6장제2절)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7:20:29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2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5.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p>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p> <p>(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p> <p>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p> <p>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p> <p>(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p> <p>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p> <p>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p>

17:20:29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3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p>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17. 석면 해체·제거 작업(제3편제2장제6절)	<p>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18. 고압작업(제3편제5장)	<p>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기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콧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콧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기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p> <p>(1) 기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p> <p>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p>
19.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p>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p>

17:20:29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4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3)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표 3**의 18종의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 3**의 점검내용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17:20:29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5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라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혹·샤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17: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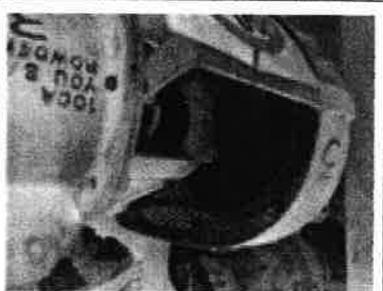
안전은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

16

# 업무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흠·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안전보건 협력업체 협의회 회의록

일 자	2023년 12월 21일 13:00 ~ 14:00 / 협력업체( 16 ) 중 ( )업체					
회의장소	대회의실					
참 석 자	구 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공장장	임준한		공영기업(소장)	임선미	
	지원부장	현주석		공영기업(안전관리자)	김경주	
	안전관리자	박영석		공영기업(제품팀장)		
	보건관리자	심미경		공영기업(가공팀장)	이광준	
	덕천ENG	이상문		공영기업(지원팀장)	박용수	
	거해전력	석민구		CJ프레쉬웨이	이영희	
	해평건설	안종록		대한통운	전형도	
	서화건설	김은수		천일환경	김광곤	
	SFA	배성우		세기ENG	박창수	
	을지공영	김기욱		대양ENC	강은모	
	대양종합전력	강태선		성우ENG	최일천	
	효원기계	이호섭				
	회 의 내 용	<p>— 작업시작 및 종료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공장 : 정시근무 및 2,3부제 근무</li> <li>○ 협력업체 : 광주공장 근무시간 및 자체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li> </ul> <p>—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amp;G) · (대한통운) 지게차 운행중 우산사용금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파트너사) 그라인더 안전커버부착 철저 요청 <span style="font-size: small;">(대략적) 각 2명</span> → <span style="font-size: small;">보안팀(1명) 1명</span></li> <li>· (전체 파트너사) 중장비 등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 QR코드 공유</li> <li>· (전체 파트너사) 연말 ·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 철저 요청</li> <li>· (전체파트너사) 12월 중대재해사이렌 사고사례 공유</li> </ul> </li> <li>○ (공영기업) · 파쇄실 리프트 조작스위치 벽면 고정 요청 (사진1)</li> <li>· 되손질실 집진기 구동체인 방호커버 설치 요청(사진2)</li> </ul>				
사진 1		사진 2				
						

# 광주공장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 QR코드 목록

2023.12.20일, 산업안전보건팀

분 류	목 록	QR코드	비 고
고소작업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대[시저형]	렌탈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차량탑재)	스카이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A형 사다리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틀비계, 말비계
	설치형 비계	 설치형 비계	시스템, 강관

■ 점검결과 (주요사항)

안전관리 시스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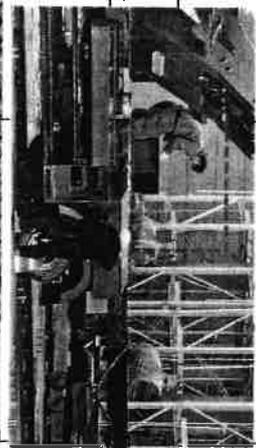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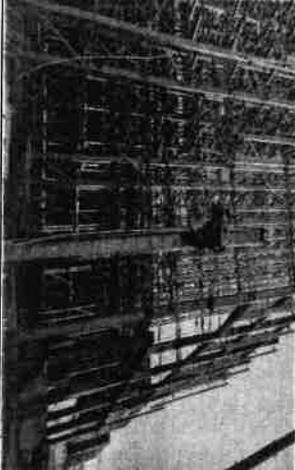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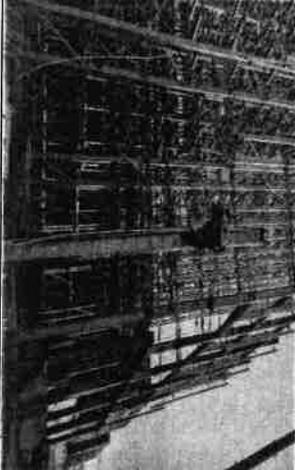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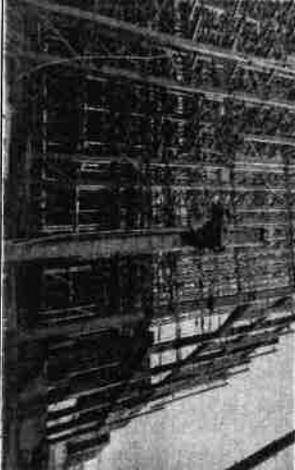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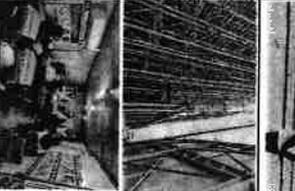
기본계획수립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세부 목표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했으나 협의체 심의 의결 일자 상이	2/12/20 (10/11/2020)
작업계획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관리 중(크롤러,하이드로 크레인)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관리 중(지게차, 스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하반기 비상조치 매뉴얼 수립 및 훈련 실시 완료 - 종사자 의견 청취 중(협의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도급사업 시 조치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중(23.08.31) - 관리감독자 지정서 부재, 협력사 관리감독자 지정사 요 -> 미용산업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서 有, 한국자동화 無	0 일간 12/20 (8/3/2020)
보건관리 PROCESS	- 작업환경측정 실시 완료(23.9.21) - MSDS 게시 관리 중(현장사무실, 협력사 사무실 등)	
안전보건 교육	- 월 1~2회 정기교육 실시 관리 중 - 1톤 이상 크레인, 안전시설물 특별교육 실시 관리 중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목적외 사용(확산소화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컨테이너 설치용 확산소화기는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불가	520
위험성평가 Process	-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관리 중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 중(월 단위)	

현장관리 부문

현장 기본 사항	- 이동통로 설치 상태 양호 - 작업장 조도 확보 상태 양호	
추락 및 낙하	- RACK 상부 수직 구명줄 설치 상태 양호 - 철골 거더 설치 작업 전 작업자 불안정한 행동	안전
중량물 취급작업	-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상주 - 장비 작업 시 안전구획 설정 실시 관리 중	
건설기계(양중, 차량계, 하역운반) 및 기구	- 건설기계 일반기준 준수 상태 양호 - 신호수 배치 상태 양호	
기계기구/설비내 작업	- 해당작업 없음	
유해위험 기계기구	- 해당작업 없음	
보호구 착용	- 스카이 기사 안전모 미착용 - 안전벨트 착용 중	안전
감전작업	- 해당작업 없음	
화재/폭발작업	- 누전차단기, 확산소화기 설치 상태 양호	
비계 및 사다리	- 해당작업 없음	
안전시설물	-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상태 양호 - 수직 생명줄 설치 상태 양호	
보건	- 해당작업 없음	
기타	- 해당작업 없음	

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가점사항	감점사항	최종점수	
	1. 안전관리시스템	77.27				77.27
	2. 현장관리	77.27				

현장 안전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NO	점검일	점검업	유형	내용	Image	원장 조영필과	조치완료 (비율)일	Image	확인일
1	12월 23일	KT&G 광주	현장기름 시행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중이나 협의체 상의 미이행	N/A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만을 10월 노사협의체 이루어짐으로 수정함	12월 22일		12월 22일
2	12월 23일	KT&G 광주	안전보건 관리체계 도입시행 시 조치	- 관리감독자 지정서 부재, 협력사 관리감독자 지정서 불 - 목적외 사용(핵심소행기)		- 한국지동화 관리감독자 지정서 작성 후 보관함 - 핵심소행기 내역 신임안전보건관리 항목에서 삭제함	12월 22일		12월 22일
3	12월 23일	KT&G 광주	신임안전 보건관리비	-> 신임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컨터이나 설치중 핵심소행기는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불가		- 스키어 기사 안전복 착용률 측정성시행 (전근로자 대상으로 특별안전교류행사함)	12월 22일		12월 22일
6	12월 23일	KT&G 광주	보호구 착용	- 스키어 기사 안전모 미착용		- 스키어 기사 안전모 착용률 측정성시행 (전근로자 대상으로 특별안전교류행사함)	12월 22일		12월 22일
7	12월 20일	KT&G 광주	추락 및 낙하	- 철골 거더 설치 작업 전 작업자 불안정한 행동		- 철골 거더 설치 후 철골 기둥으로 이동함 (근로자 대상으로 특별안전교류행사함)	12월 22일		12월 22일